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63호

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9호)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1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8조의4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대상제품 지정 등 업무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8조의4

3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세부사항 규정을 정하기 위한 목적 추가(안 제1조 개정)
- 나.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항 명확화(안 제12조 개정)
- 다.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요건 및 절차, 유효기간 등(안 제15조의 2 신설)
- 라.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에 소기업 우선구매대상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25조 개정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(공공구매제도과)으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(공공구매제도과)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- 우편 :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
- 팩스 : 042-472-3294

○ 문의 :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(042-481-4466, 4546)

○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※ 붙임

1.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
2.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(안)전문 1부